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1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한강공원에 친환경 순환관람차를 도입하여 생태환경 및 시설물과 연계하는 등 관광 활성화 도모
- 나. 한강 개최 축제 및 시설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근거, 방식 및 범위 규정
- 나.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이용대상 및 이용료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
 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3. 6. 16. ~ 7. 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이상익(☎3780-0755)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공원 녹지로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
2. “순환관람차”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.
3. “시설”이란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4. “이용자”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이동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순환관람차의 명칭) 제2조제2호에 따른 순환관람차의 명칭은 “한강 해치카”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순환관람차

운영지역의 특성 및 이용자 볼거리·즐길거리 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순환관람차의 운영)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를 직접 운영한다. 다만,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·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예산부족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관람차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5조(노선 및 운행범위) 시장은 한강공원의 성격, 위치,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,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.

제6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이용자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관람차를 무료로 운영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, 행사 등 관계자
2. 국가유공자·의사상자·이동약자(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·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·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

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이동약자에게 편의제공)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홍보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(제6조제1항 관련)

기준 및 이용료 범위		비 고
* 1회 탑승 - 어린이·청소년(6~18세) - 성 인(19세 이상)	500~2,000원 1,000~3,000원	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순환관람차 도입, 운영에 따른 차량구매비, 시설설치비(정류장 등), 인건비(기간제)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행정7급 이상익